

주택조사 안내

주택조사란?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주택조사 절차는?

사전에 조사안내문 발송 및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 조사 합니다.



주택조사 내용은?

● 임차가구: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유형, 시설, 상태등) 등

● 자가가구: 물리적 상태(구조안전·설비·마감등), 실제 거주 여부 등

※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신청방법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시기: 2015년 6월
- ※ 시행시기: 2015년 7월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소득 · 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 · 재산 신고서(동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동주민센터 비치, 부양의무자 서명 필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 통장 사본
-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보건복지 콜센터 129)

- ※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www.hb.go.kr) 및 국토교통부(www.molit.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리플렛의 내용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은 고쳐드립니다."



Housing Benefit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 안내



새로운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법:「주거급여법」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됩니다.
- ※ 중위소득의 약 33% → 43%로 확대(4인가구 월 135만원 → 182만원 수준)
-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 하는 가구입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43%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67	114	148	182	215	249

- ※ 중위소득: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 부양의무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제외)

지원 절차는?

급여신청 시 ①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됩니다.



시행시기는?

201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mark>Ź</mark>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 지원기준은?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
-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을 차감
- ※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지급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원
 -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	IL C	미/으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44	74	96	118	140	162

● 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 가구원수별로 산정

(단위: 만원/월)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 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4급지 (그 외)
1인 가구	19	17	14	13
2인 가구	22	19	15	14
3인 가구	26	23	18	17
4인 가구	30	27	21	19
5인 가구	31	28	22	20
6인 가구	36	33	25	23

-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천원 이하 절사)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 가구)

☞ 26만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임대료 26만원 전액 지급

(기준임대료 상한)

※(개편 전)

7만원 = [110만원(현금급여 선정기준) - 80만원(소득인정액)]

× 약 22%(주거급여비율)

3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기준은?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 설비 ·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 · 중 · 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립니다.

- ※ 편의시설: 단차제거, 문폭 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 주택의 노후도 평가: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 · 설비 · 마감 등 최저주거 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평가(19개 항목)
 - 구조안전(3개 항목): 기초·지반 침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 설비상태(12개 항목):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4개 항목):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 주택개량 지원 내용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구분	경 보 수	중보수	대 보 수
수선비용	350만원	650만원	950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오ㆍ급수, 난방 등	지붕, 기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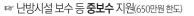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까지 차등지원

구분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②중위소득 35% 이하	③중위소득 43% 이하	
지원율	100% 지원	90% 지원	80% 지원	

(예시) 대보수(950만원) 대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 ~ 43% 이하일 때, 지원금액의 80%인 76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소득인정액 80만원, 난방시설 보수, 단차 제거 등이 필요한 **장애인** A씨(3인기구)



+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380만원 한도)

